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77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시청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

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2017.72㎡)
- 주요시설 : 보육실, 놀이터 등
- 인가일 : '95. 3. 6.(2000.3.3.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



<어린이집 전경>



<실외놀이터>

나. 운영개요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46명('25. 7월 말 기준)

※ 3월 원아모집 기준 : 현원 150명

○ 교 직 원 : 총 45명

- 원장 1, 선임교사 1, 교사 33, 사무원 1, 간호사 1, 영양사 1,
조리사 4, 시설관리사 1, 보육도우미 2

○ 입학자격 : 만0~만5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26.3.1.~'29.2.28.)

○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26년 예산(안) : 1,923백만원(보육료 수입 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99.01월~'01.07월(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2차 : '01.08월~'08.10월(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3차 : '08.11월~'11.09월(학교법인 숙명학원)
- 4차 : '11.10월~'14.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5차 : '14.10월~'17.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6차 : '17.10월~'20.09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7차 : '20.10월~'23.02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8차 : '23.03월~'26.02월(킨더솔레교육재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4조의3, 제6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6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25.6.5.)

○ '25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5.6.26.) 심의결과 : '적정'

※ 작성자 : 행정국 인력개발과 김남철 (☎ 2133-5758)